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합56322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권재상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섭

변 론 종 결 2021. 10. 8.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1,337,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2019. 11. 1.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9. 11. 1. 접수 제1035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건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E은 2008. 3. 10. F과 사이에 부천시 G빌딩 중 상업복합시설 부분에 관하여 E이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6. 피고 C 및 H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약정서

주식회사 I 소유의 주식 및 사업권과 관련 공동사업자인 H, 피고 C, 원고는 상호 신의와 성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다.

- 다 음 -

사업장 개요

사업장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J

주차장 용지 신축공사

상가 : 29세대, 오피스텔 : 240세대

1) H, 피고 C, 원고는 사업에 대하여 투입되는 자금 및 분양대금 또한 사업권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2) 본 사업의 지분은 H, 피고 C, 원고, 기타는 30%:30%:30%:1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법인세 및 제세공과금을 최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 피고 B은 2019. 1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2019. 11. 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621,337,5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순번	발생일시	채권액수(원)	채권의 종류
1	2008. 7. 7.	100,000,000	차용금
2	2008. 7. 29.	200,000,000	차용금
3	2010. 1. 19	118,774,500	분양용역 수수료채권
4	2011. 9. 27.	9,500,000	차용금
5	2012. 4. 6.	40,000,000	차용금
6	2012. 6. 26.	95,000,000	차용금
7	2013. 2. 28.	58,063,000	분양용역 수수료채권
합계		621,337,500	.

나. 판 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에게 2011. 9. 27. 9,500,000원, 2012. 4. 6. 40,000,000원을 각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49,500,000원 외에 추가로 돈을 대여하였다거나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 C가 지배하는 회사들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 C가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갑 제4호증의 1, 2를 근거로 원고가 2008. 7. 7. 및 같은 달 29. 합계 300,000,00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4호증의 1, 2 각 차용증에는 F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차용증의 ‘차용인’란에는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대주로는 E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차용증은 E이 2008. 3. 10. F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2010. 1. 19. 분양용역 수수료채권은 갑 제5호증의 약정서, 갑 제6호증의 분양수수료 정산서에 기초한 것인데, 위 약정서 및 분양수수료 정산서에 수수료를 지급할 자는 F이 기재되어 있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채권자도 E이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갑 제9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C에게 2012. 6. 26. 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9호증의 송금증은 원고가 2012. 6. 26. 주식회사 K에게 95,000,000원을 송금한 것에 관한 서류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갑 제10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58,063,0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10호증의 기재 내용은 주식회사 L에 대한 미지급금이 58,063,000원이라는 것을 원고, 피고 C, M, N이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 C의 변제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빌린 49,5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12. 3. 23.부터 2013. 3. 15.까지 7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49,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2. 3. 23.	800,000
2	2012. 8. 13.	700,000
3	2012. 10. 15.	800,000
4	2012. 10. 22.	400,000
5	2012. 10. 26.	20,000,000
6	2013. 3. 6.	16,800,000
7	2013. 3. 15.	10,000,000
합계		49,500,0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49,500,000원에 관하여 피고 C가 분양대행업을 하던 원고에게 운영비, 분양대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C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앞에서 본 것과 같이 F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운영비,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 발행 주식 100,000주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피고 B도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1,337,5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책임재산인데,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621,337,5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를 해하는 것을 잘 알면서 피고 D과 공모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가 피고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 발행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피고 C와 연대하여 피고 C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49,500,000원을 이미 변제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에 의하여 지배되는 회사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30%의 지분을 양수받지 못할 경우 피고 C와 연대하여 621,337,5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석, 판사 박상인, 판사 김태진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수원시 권선구 J 주차장 4,939.6㎡. 끝.

